

韓國과 美國의 裁判管轄權에 관한 比較研究

李 德 珉*, 朴 容 燮**

A Comparative Study on the Scop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Courts in Korea and the U. S. A.

Lee, Duk-min · Park, Yong-sub

Abstract

It is very natural that the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which deals with the right of countries to judge the International civil disputes, be regulated by the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 international efforts for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has been very insignificant. Furthermore, there is no general principle approv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a consequence, each country treats and resolves the cases brought into his courts through his own independent home regulations. Thus, this thesis deals with a comparative study of the legal attitudes and trends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courts in the U.S.A. and the Republic of Korea.

第1章 序 論

國內에 있어서, 私人間의 民事紛爭은 국가기관인 자국의 法院이 이를 裁判하고 執行한다. 이러한 각국의 裁判權과 그 판결의 執行權은 主權의 일 작용인 司法權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범위가 主權이 미치는 범위와 동일하고, 國家獨立의 原則上 그 나라의 判決이 다른 外國에서 또는 외국의 판결이 그 나라에 效力을 미쳐야 할 이 유도 없다. 따라서, 國際社會에 있어서 涉外的인 요소를 갖는 民事紛爭을 裁判하고 執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제적 司法機關에 의하거나 條約 등의 國際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涉外的 民事紛爭을 規律할 司法機關은 존재하지 아니

*석사과정 해사법학과 해사법전공

**해사법학과 교수

할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의 法院이 이를 裁判하고 執行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특정 사안에 관한 일부 規定을 제외) 國際적으로 통일된 原則도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각국은 獨自的인 입장에서 國內法에 따라 특정 사건에 대하여 裁判管轄權을 가지느냐의 여부를 決定하고, 外國判決을 承認함에 있어서 그 外國法院의 裁判管轄權의 존부를 심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涉外的 民事紛爭은 그에 대한 法的 規律이 특정 國家의 內國法院에 의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각국의 社會, 文化, 慣習, 法과 裁判制度가 상이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복잡하고도 미묘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더욱이 現代에 있어서 國際間的 交流과 去來는 비약적으로 擴大되는 추세에 있으며, 國際間 交易의 增加에 따라서 國際的(涉外的)인 要素를 가진 民事紛爭 또한 急增하므로, 이러한 涉外적 民事紛爭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規律하는 法的 裝置의 必要性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涉外的 民事紛爭을 어느 나라 法院에서 裁判할 것인가 하는 法廷地 選擇의 문제에 있어서 具體的 妥當성과 法的 安定성을 확보할 수 있는 裁判管轄權 理論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第2章 裁判管轄權 一般論

國際的 裁判管轄權에 관한 原則은 國際적인 규모에서 국가를 단위로 하는 裁判權 分配의 문제이므로 超國家的인 國際法으로서의 確立이 艱難하다 할 것이나 이에 관한 國際條約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各國은 재판관할권을 자기 나라 獨自의 立場에서 國內法의 形式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독자적인 입장에서 國內法에 따라 특정 사건에 대하여 裁判管轄權을 가지느냐의 여부를 결정하고, 外國判決을 承認함에 있어서 외국의 裁判管轄權의 存否를 심사할 수 있을 뿐이다.

裁判管轄權의 決定에 대하여 大陸法系의 국가는 원칙적으로 國籍에 바탕을 두고 被告住所地主義라는 國內 民事訴訟法上의 土地管轄에 관한 규정이 間接적으로 이용된다. 英美法系의 國家에서는 당사자와 法廷地 사이에 合理的인 관계가 있음을 前提로 實效性의 原則과 服從의 原則이라는 實用的인 基準이 사용되고 있다.

裁判管轄權에 관한 법원으로서의 條約과 國內法으로서 涉外사법과 국내 민사소송법 및 條理가 있다. 裁判管轄權에 관한 條約으로서의 “國際私法에 관한 헤이그회의”에 의한 일부 협약과 유럽공동체에 의한 “民事 및 商事에 관한 法院의 裁判管轄權 및 法院의 判決의 執行에 관한 조약이 있으며, 海事關聯 裁判管轄權에 관한 國際條約으로서 “船舶衝突에 관한 民事裁判權의 統一條約”과 “航海船의 押留·假押留에 관한 國際協約”이 있으나 裁判管轄原則의 완전한 世界的 統一은 遠遠한 실정이다. 이에 各國은 獨自的인 國內法에 근거하여 裁判管轄權의 존부를 판단하고 있다.

裁判管轄權의 판단기준이 될 國內法으로서는 각국의 涉外私法과 國內 民事訴訟法이 있다. 涉外私法의 이념은 어느 나라의 실질법질서에 의하여 문제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임에 비하여, 裁判管轄權의 決定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裁判하는 것이 裁判의 適正과 公平을 기할 수 있는가 하는 상호 별개의 理念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涉外私法이 재판관할권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각국의 국내 民事訴訟法의 규정이 國際裁判管轄의 決定에 어떠한 關聯을 가지느냐가 문제된다. 이에 관한 학설로서는 민사소송법에 裁判管轄權의 限界에 관하여 직접의 규정이 없으므로 土地管轄(裁判籍)에 관한 규정을 逆으로 推知하여 國內에 裁判籍이 인정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는 逆推知說과 裁判管轄에 관한 名文의 規定이 없으므로, 국제民事訴訟法의 基本理念인 條理, 즉 어느 나라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재판의 適正과 公平 그리고 能率的 進行에 적당하겠는가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管轄配分說이 있다. 국내 民事訴訟法上의 裁判籍에 관한 규정은 裁判權의 場所的 配分이라는 면에서 國際裁判管轄權의 문제와 類似한 점이 있으나 涉外訴訟에는 歷史, 法律, 言語, 宗教, 道德 등이 다른 國際間의 사건이 그 대상이므로, 裁判의 適正, 公平, 能率 등의 實效를 거둘 수 있도록 國際的 배려를 基礎로 修正할 필요가 있으므로, 管轄配分說이 타당할 것이다.

裁判管轄權의 法源으로서의 條理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國家主義와 國際主義 및 普遍主義의 입장이 있으나, 당사자의 便宜와 公平, 裁判의 適正, 迅速과 能率의 요충에 따르는 재판을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보편주의가 타당한 입장이다. 또한, 재판관할권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인으로서의 소송당사자의 便宜, 公平, 豫測可能性, 재판의 迅速과 能率, 公平, 證據調查와 證人審問의 容易性, 판결의 實效성과 法選擇과의 關聯性 및 該當 事件에 관한 國家의 利益 등이 있다.

第3章 美國의 裁判管轄權 決定基準

裁判管轄權에 관한 미국의 전통적인 판례의 입장은 이를 對人管轄權과 對物管轄權 및 準對物管轄權으로 분류한 후, 對人管轄權은 피고인 사람에 대한 사실상의 支配權, 對物管轄權은 財産의 물리적 現存, 準對物管轄權은 채무자 소유의 財産에 대한 押留를 각 그 基礎로 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입장은 경제의 발전과 과학, 교통·통신기관의 발달로 인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점차 수정된다.

對人管轄權에 있어서 전통적 관할원칙(Pennoyer原則)은 International Shoe Co.

v. Washington 사건에서 나타난 最小의 關聯理論과 그에 따른 管轄權擴張立法(Long Arm Statute)에 의하여 수정, 확장된다. 그 결과, 法廷地가 당사자나 사건과 實質的인 關聯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당사자나 법원의 공적 이익에 타당치 않는 경우도 있게 되어 不適當한 法院에 있어서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리를 구제하여야 한다는 반성에 의하여 Gulf Oil Corp. v. Gilbert 사건에서 연방 최고법원은 不便한 法庭理論을 수용하였다.

對物管轄權의 기초는 재산의 物理的 現存이었으나 연방최고법원의 Shaffer v. Heitner에서 사건을 계기로 수정되게 되었다. 위 판결에서 연방최고법원은 그 사건을 그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正義의 觀念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合理的(Reasonable)이냐의 여부에 따라 관할의 유무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던 것이다.

準對物管轄에 대한 전통적인 관례의 입장은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거치면서 점차 변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방최고법원은 1905년의 Harris v. Balk 사건에서 피압류인이 州內에 일시 체재하여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Seider v. Roth 사건에서와 같이 準對物管轄이 부적당한 法廷地에까지 널리 管轄權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자 Shaffer v. Heitner 사건에서 準對物管轄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Harris 原則의 적용범위를 축소시켰다. 연방최고법원은 위 International Shoe Co. v. Washington 사건에서의 適法節次條項에 근거한 最小의 關聯理論을 그 근거로서 실시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연방최고법원의 裁判管轄權에 대한 관례들은 그 변천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경향이 있다할 것이다. 첫째, 對人管轄에 관한 International Shoe Co. v. Washington 사건에서 나타난 이후 Shaffer v. Heitner 사건에 의하여 對物管轄 및 準對物管轄에까지 적용되기에 이른 適法節次條項에 근거한 最小의 關聯理論이다. 위 이론에 의하여, 미국의 裁判管轄權은 종래 裁判管轄權의 基礎로서 피고의 所在(presence)나 住所(domicile) 등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인 방법으로 관할권유무를 결정하던 전통적이고 정형적인 결정방식에서 벗어나 법정책과 법목적의 면에서 정당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考慮 參酌하는 非定型的인 方法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非形式的인 最小의 關聯理論은, 피고의 物理的 現存(presence) 또는 住所(domicile)만으로 자동적으로 裁判管轄權이 인정되는 전통적 裁判管轄權決定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의 새로운 구성을 의미한다. 둘째, Shaffer v. Heitner 사건에서 International Shoe Co. 사건이 보여 준 最小의 關聯理論을 도입함으로써, 裁判管轄에 있어서 對人管轄과 對物管轄 및 準對物管轄로 3분하여 각기 그 관할의 기초를 달리하던 전통적인 관할이론이 변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1947년 연방최고법원의 Gulf Oil Corp. v. Gilbert 사건에서 일반화된 不便한 法庭理論(Forum Non Conveniens Doctrine)이다.

법원의 裁量에 의하여 적당한 法廷地가 따로 있을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inconvenient) 경우에 管轄權을 否認할 수 있다는 이 이론은 어느 의미에 있어서도 公平과 實質的 正義의 觀念에서 裁判管轄權의 문제를 단지 그 유무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實質적으로 어느 법원이 그 소송에 관하여 가장 적당한 법원이나 하는 문제로 그 초점을 옮겼다는 점에서 새로운 裁判管轄權理論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不便한 法庭理論은 법관에게 커다란 裁量權을 부여하게 되는 만큼 法官의 자의를 제거하고 客觀적으로 安定性 있는 原則을 세워야만 할 것이다. 특히 國際訴訟에 있어서 政策的 考慮에 기한 法官의 裁量은 自國民의 利益保護에 치중되어 涉外私法에 있어서의 普遍的 正義와 모순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第4章 韓國의 裁判管轄權의 決定基準

우리 나라는 裁判管轄權의 일반적 기준을 국내법으로 규정하는 바도, 어떠한 國際條約에 가입한 적도 없으므로 어떤 基準에 의하여 裁判管轄權의 존부를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涉外私法은涉外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準據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치산선고, 실종선고 등을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涉外私法이 정하는 準據法이 동시에 재판관할권 결정의 일반적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民事訴訟法の 土地管轄 규정이 國際裁判管轄의 決定에 어떠한 關聯을 가지느냐에 대하여는 逆推知說과 管轄配分說이 대립이 있으나 民事訴訟法上의 裁判籍에 관한 규정이 裁判權의 場所의 配分이라는 면에서 國際裁判管轄權의 문제와 類似한 점이 있으므로 民事訴訟法の 國內 裁判籍에 관한 規定을 「參酌」, 「類推適用」 또는 「勘案」 하되, 國際的 配慮를 가미하여 條理에 따라 합리적으로 裁判管轄權을 決定하여야 한다는 管轄配分說이 타당하다.

우리 나라의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마다 民事訴訟法の 土地管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裁判籍이 국내에 있을 경우 裁判管轄權이 있다고 보거나 또는 당사자의 의사 및 국내민사소송의 裁判管轄에 관한 條理에 비추어 裁判管轄權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1992. 7. 28. 선고 91다41897호 판결 등에서 裁判管轄權의 결정기준에 관한 기본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 나라 대법원의 입장은 「涉外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國際裁判管轄權에 관하여 條約이나 일반적으로 承認된 國際法上의 原則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成文法規도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公平, 裁判의 適正, 迅速을 기한다는 基本理念에 따라 條理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民事訴訟法の 土地管轄에 관한 規定 또한 위 基本理念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裁判籍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 나라에 裁判管轄權이 있다고 認定함이 상당하나,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條理와 正義觀念 등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裁判管轄權의 有無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民事訴訟法の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내토지 관할의 결정기준으로서 被告住所地의 原則은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에 있어서도 당사자간 公平의 理念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둘째, 義務履行地는 피고가 계약당시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應訴케 하여도 不合理的하지 않을 것이나,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피해자의 주소지국에서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應訴를 強制당한다면 公平에 반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訴訟의 適正과 公平하고 能率的인 運營이라는 國際民事訴訟法上의 理念에 따라 合理的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피고의 재산이 국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管轄權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不動産에 관한 訴는 부동산소재지 법원의 裁判管轄權은 부동산상의 권리가 그 소재지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裁判管轄權의 원칙으로서 각국이 일반적으로 承認하고 있다. 動産의 경우에 국내에 소재하는 특정물건이 직접 청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그 소재지국에 裁判管轄權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재산소재지를 근거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더라도 그 재산과 청구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져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선박, 비행기 등 일시 머무는 재산이 있다하여 관할권을 긍정한다거나 원고가 국내에 소재하는 피고 재산으로부터 아무런 만족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치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裁判管轄權을 인정한다면 피고에게 가혹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며 청구액에도 어느 정도 상당하는 재산이 국내에 계속하여 소재하는 때에 비로소 재판관할권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不法行爲地는 裁判節次에 있어서 立證 및 證據蒐集이 容易하며 被害者의 提訴의 便宜라는 被害者 保護 思想과 가해자측에 대해서도 豫見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근거로서의 合理性이 인정될 것이다. 다섯째, 당사자간의 재판관할권에 관한 合意는 원칙적으로 유효할 것이나 관할의 합의가 일방의 경제적 우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현저히 不合理的한 경우에는 國際私法上 公序에 반하는 것으로 하여 無效로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피고가 提訴地의 법원에 管轄違反의 抗辯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本案에 관하여 辯論하거나 準備節次에서 陳述한 때에는 관할권이 발생하는 應訴管轄은 섭외사건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第5章 結 論

渉外的인 要素를 가진 민사 분쟁의 해결을 각국이 자기나라 독자의 입장에서 개별적인 원칙을 세워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오늘날 國際社會의 現實에서 裁判管轄權의 문제는 그 重點을 각국이 얼마만큼 자국의 裁判管轄權을 適正하게 制限하느냐에 있을 것이다. 이는 각국이 실제로涉外사건에 관하여 裁判管轄權을 否認한 事例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각국이 사건과 당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관련 또는 이익에 의하여 자국에서 재판하는 것을 正當化한다면 그 재판의 외국에서의 承認과 執行에 있어서 문제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渉外的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法的 安定性的의 확보라는 國際私法의 理念과 원고와 피고의 公平한 保護라는 訴訟法的의 理念에 반하게 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는 앞서 살펴 본 독일 民事訴訟法 제 23조 제2항, Common Law의 所在(presence), 미국법상의 管轄權擴張立法(Long Arm Statute), 프랑스 민법 제14조(원고의 國籍) 등이다.

우리 나라 대법원은 當事者의 公平, 裁判의 適正과 迅速이라는 民事訴訟의 基本理念에 비추어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보다 合理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例外的인 境遇 또는 특별한 事情이 있는 境遇 에는 우리 나라의 裁判管轄權이 否認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형식적으로 우리 나라 법원의 管轄權이 認定된다 하더라도, 證據蒐集, 被害者의 保護, 당사자간의 衡平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에 있어서의 最小의 關聯理論과 不便한 法庭理論(Forum Non Conveniens Doctrine) 및 The Bremen v. Zapata 사건에서의 合理性 判斷과 같이 正義와 衡平이라는 國際 民事訴訟法의 基本理念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比較研究와 판례의 축적이 절실하다. 이를 통하여涉外생활에 있어서 具體的 妥當性和 法的 安定性을 확보할 수 있는 裁判管轄權 理論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國際條約에 의한 國際法的 努力이나 국제 재판관할권이 일반적 기준을 정하는 입법적 해결이 문제의 보다 본질적 해결방안일 것이다.

第5章 結 論

渉外的인 要素를 가진 민사 분쟁의 해결을 각국이 자기나라 독자의 입장에서 개별적인 원칙을 세워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오늘날 國際社會의 現實에서 裁判管轄權의 문제는 그 重點을 각국이 얼마만큼 자국의 裁判管轄權을 適正하게 制限하느냐에 있을 것이다. 이는 각국이 실제로涉外사건에 관하여 裁判管轄權을 否認한 事例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각국이 사건과 당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관련 또는 이익에 의하여 자국에서 재판하는 것을 正當化한다면 그 재판의 외국에서의 承認과 執行에 있어서 문제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渉外的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法的 安定性의 확보라는 國際私法의 理念과 원고와 피고의 公平한 保護라는 訴訟法的 理念에 반하게 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는 앞서 살펴 본 독일 民事訴訟法 제 23조 제2항, Common Law의 所在(presence), 미국법상의 管轄權擴張立法(Long Arm Statute), 프랑스 민법 제14조(원고의 國籍) 등이다.

우리 나라 대법원은 當事者의 公平, 裁判의 適正과 迅速이라는 民事訴訟의 基本理念에 비추어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보다 合理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例外的인 境遇 또는 특별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우리 나라의 裁判管轄權이 否認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형식적으로 우리 나라 법원의 管轄權이 認定된다 하더라도, 證據蒐集, 被害者의 保護, 당사자간의 衡平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비록에 있어서의 最小의 關聯理論과 不便한 法庭理論(Forum Non Conveniens Doctrine) 및 The Bremen v. Zapata 사건에서의 合理性 判斷과 같이 正義와 衡平이라는 國際 民事訴訟法의 基本理念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比較研究와 판례의 축적이 절실하다. 이를 통하여涉外생활에 있어서 具體的 妥當性과 法的 安定性을 확보할 수 있는 裁判管轄權 理論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國際條約에 의한 國際法的 努力이나 국제 재판관할권이 일반적 기준을 정하는 입법적 해결이 문제의 보다 본질적 해결방안일 것이다.

參 考 文 獻

1. 韓國文獻

가. 單行本

姜玟中, 民事訴訟法, 서울, 박영사, 1988.

權寧星, 憲法學原論, 서울, 법문사, 1989.

- 金祥源 외, 改訂版註釋民事訴訟法(1-4), 서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
- 金容漢·趙明來, 國際私法, 서울, 정일출판사, 1994.
- 金哲洙, 新憲法概說, 서울, 박영사, 1987.
- 朴容燮, 海商法, 서울, 형설출판사, 1994.
- 裴炳泰, 註釋 海商法, 서울, 한국사법행정학회, 1981.
- 徐燉珪, 第3全訂 商法講義(下卷), 서울, 법문사, 1985.
- 徐希源, 新稿版國際私法講義, 서울, 일조각, 1993.
- 宋相現, 民事訴訟法, 서울, 박영사, 1990.
- 宋相現·金炫, 海商法原論, 서울, 박영사, 1993.
- 孫珠瓚, 全訂增補版 商法(下), 서울, 박영사, 1989.
- 孫珠瓚, 商法概說, 서울, 박영사, 1986.
- 裴炳泰, 註釋 海商法, 서울, 한국사법행정학회, 1981.
- 李均成, 新體系 海商法原論, 서울, 해운산업연구원, 1988.
- 李範燦, 商法概論, 서울, 삼영사, 1989.
- 李相道, 英美法辭典, 서울, 청림출판, 1994.
- 李時潤, 新訂版 民事訴訟法, 서울, 박영사, 1993.
- 李好研, 國際私法, 서울, 경문사, 1983.
- 鄭熙喆, 商法學(下), 서울, 박영사, 1990.
- 蔡利植, 商法講義(下), 서울, 박영사, 1990.
- 崔公雄, 國際訴訟, 서울, 육법사, 1984.
- 崔基元, 商法學新論(下), 서울, 박영사, 1990.
- 黃山德·金容漢, 新國際私法, 서울, 박영사, 1987.

나. 論文

- 姜秉燮, 國際裁判管轄, 涉外事件의 諸 問題(下), 裁判資料第34輯, 법원행정처, 1986.
- 高光夏, 船舶假押留에 근거한 韓國法院의 外國船社에 대한 裁判管轄權, 辯護士(16輯), 1986.
- 金燦奎, 國內裁判所의 裁判管轄權과 國際法, 고시연구, 1987. 11.
- 金燦奎, 國際事件에 대한 國內裁判所의 管轄權, 국제법협회논총, 1987. 12.
- 박태범, Forum Non Conveniens, 外國司法研修論集第7卷(재판자료제47집), 법원행정처, 1989. 12.
- 양삼승, 獨逸民事訴訟法, 外國裁判資料集, 裁判資料第4輯, 법원행정처, 1980.

- 劉載豊, 國際訴訟의 裁判管轄에 관한 研究,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6.
- 유중원,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준거법과 재판관할의 결정기준, 辯護士 26輯, 서울지방변호사회, 1996.
- 李恭炫, 國際裁判管轄權의 決定基準, 民事判例研究 第17輯, 민사판례연구회, 1995.
- 李秉和, 涉外不法行爲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2.
- 李仁帝, 國際的管轄合意, 司法論集 第20輯, 법원행정처, 1989.
- 印亨武, 미국법상의 裁判管轄權, 사법행정, 1988.
- 林東喆, 船主責任限制制度의 發展과 1976년 海事債權責任制限條約, 한국해운학회지, 10, 1990. 10.
- 진병서, 國際的 訴訟競合, 辯護士 26輯(회원연구논문집), 1996.
- 崔公雄, 涉外事件과 民事訴訟法の 適用問題, 사법연구자료, 제1집, 1984.
- 崔公雄, 國內財産의 所在와 國際裁判管轄, 司法論集 20輯, 1989.
- 崔公雄, 國際訴訟과 合意管轄, 저스티스(제19권), 1986.
- 崔公雄, 民事訴訟法第9條와 裁判管轄權, 민사법학의 제문제, 박영사, 1990.
- 한상호, 외국관결의 승인과 집행, 外國司法研修論集, 裁判資料47輯, 법원행정처, 1989.
- 崔鐘吉, 不法行爲의 準據法, 저스티스, 제10권, 제1호, 한국법학원, 1972.

2. 外國文獻

가. 日本書

- 渡邊惺之, 財産關係의 裁判管轄權, 國際私法の 爭點, 1980.
- 三浦正人, 州外居住者의 保險契約債權에 對する 差押手續의 管轄權, 國際法外交雜誌 69卷3號.
- 石黒一憲, 國際的 裁判管轄의 合意, 國際私法の 解釋論的構造, 1980.
- 池原季雄, 國際的 裁判管轄權, 新實務民事訴訟講座 七卷, 1982.
- 澤木敬郎, 國際裁判管轄權再考, 國際商事法務九卷, 1981.
- 澤木敬郎, 國際的 訴訟競合, 新實務民事訴訟講座 七卷, 1982.
- 坪田潤一郎, 國際取引法の 基本問題, 1971.

나. 西洋書

John J.Cound, Jack H.Friedental and Arthur R.Miller, Civil Procedure,
West Publishing Co, 1968.

Robert A.Leflar, American Conflicts Law(3th ed), 1977.

Willis L.M.Reese and Maurice Rosenberg, Conflict of Laws(8th ed),
Foundation Press Inc., New York, 1984.

William C.Powers,Jr., Formalism and Nonformalism in Choice of Law
Methodology, Washington Law Review, 1976.

